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'통합특별시'를 신설하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」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유·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 대상에 통합특별시 포함(안 제12조제6항)

- 유·도선(비상구조선 포함)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, 수수료 납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'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'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로 명확히 규정함

나. 유·도선 관련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추가(안 제30조)

- 유·도선에 관한 각 호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 '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'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로 통일하여 규정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00.00.~0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6항 중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를"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30조 본문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를"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"시·도지사"라 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안전검사) ① ~ ⑤ (생략)	제12조(안전검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·도선(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)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30조(권한의 위임)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·도선	제30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268